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4일, 조경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4.12.26.)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5.2.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풍력 보급 측면에서도 제한된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여 매매 차익을 노리는 소위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로 인해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해상풍력산업 지원 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하여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 및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 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9.)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